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12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4.

발의자 : 박경흠, 김태욱, 홍영진,
안영호, 강혜순, 문희성

1. 주 문

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가. 구성목적: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, 결산,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심사

나. 구성인원: 5명

다. 활동기간: 구성일 ~ 2024. 6. 30

2. 발의이유

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각종 예산안 및 결산 심사와 관련한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

3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